

예산총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9,078,763	17,672,363
일반회계	473,556,716	14,206,701
특별회계	115,522,047	3,465,661
공기업특별회계	46,638,850	1,399,166
상수도사업	10,948,336	328,450
하수도사업	35,690,514	1,070,715
기타특별회계	68,883,197	2,066,496
의료급여기금	1,829,684	54,891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167,860	5,03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70,000	2,100
농공지구조성	26,819,039	804,571
중소기업육성자금	5,374,000	161,2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54,268	34,628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01,100	6,0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821,500	24,645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19,821,000	594,630
수질개선관리	4,742,296	142,269
보건진료	1,736,790	52,104
농업발전기금	6,145,660	184,37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828,802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1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